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세칙은 <u>도선법</u> 제18조제3항 및 <u>도선법 시행규칙</u>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선법」 ----- <u>같은 법 시행규칙</u> 제17조의2에 따라-----		-----
제2조(적용범위) <u>도선법</u>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u>도선 요청을</u> 한 선박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이 도선사를 승·하선시켜야 하는 승선·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업무처리요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도선법」 ---- 제20조에 따라 <u>도선 요청을</u> -----		-----한다-----
제3조(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제3조(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① <u>부산항의</u>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이하“승선·하선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① <u>부산항</u> -----		---이하 “승선”-----
② 부산항의 기상악화(기상특보 및 그에 준하는 기상상태를 포함 한다)시의 승선·하선구역(이하 “기상악화시의 승선·하선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3] 및 [별표		②----- <u>풍랑주의보</u> 이상의 기상특보 -----		-----

4]와 같다.

③ 선장은 선박 안전운항을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선사와 협의하여 다른 선박의 운항에 지장이 없는 구역에서 당해 도선사를 승선·하선시킬 수 있다.

④ 선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선사를 승선·하선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부산항항만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항만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

<삭제>

<삭제>

제3조의2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하선)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선사가 승선·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조선소에 입·출항하는 경우
2.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박 또는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선·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선·하선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적용 대상 선박) 북항의 기상악화시의 승선·하선구역에서 해당 도선사를 승선·하선시킬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1. (생략)
2. 군함, 위험물 등 적재화물의 특성상 양·적하의 긴급을 요하는 선박

제5조(운영시기) ① 청장은 기상악화시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상악화시의 승선·하선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기상악화시 승선·하선구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선사와 협의하여 [별표1]의

3. 환자이송·인명 안전 등 긴급한 경우

4. 태풍 내습·강풍 등으로 기상·해상 상태가 급변한 경우

5. 그 밖에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하선해야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선박) -----기상악화 시의-----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생략)
2. -----
----- 긴급히 양·적하해야 하는 --

제5조(운영시기) ① -----(삭제)
-----제4조에
따라 기상악화 시의-----
-----.

② 제1항에도-----
-----기상악화 시-----

북항, 감천항 또는 부산항 신항의
승선·하선구역 중 어느 하나의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하선
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총톤수
30,000톤 이상의 화물선을 포함한다.

③ 선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부산항항만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항만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산항항만교통
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항만교통
관제센터에서는 기상상태, 도선사
승선 여부 등에 대하여 도선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근무시간외는 부산항항만교통
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항만교통
관제센터에서 확인하고 익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근무일에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의2(승선·하선구역에서
승선·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
행위 금지) 도선사는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기상 악화시 도선
사 승선·하선구역에서 승선·
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법 제2
4조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구간에서 동행한 선박에
대하여 도선행위를 하여서는

-----.

③ 선장이 제2항에 따라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항해상교통
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해상교통
관제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제5조의2(승선·하선구역에서
승선·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
행위 금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상악화 시-----
----- 「도선법」 제24
조에 따른-----볼 수
있다. 또한 -----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선장은 동행한
도선사에 대하여 도선행위를
요구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통보 및 기록 등 관리·유지)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선장이 기상악화시의 승선·하선
구역에서 해당 도선사를 승선·
하선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항
도선사회에 모사전송, 텔렉스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부산항도선사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 및 기록 등을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운항) 선장은 선박이
방파제 해역 등 위험해역을 통항
하는 때에는 부산항항만교통관제
센터 또는 부산신항항만교통관제
센터에서 해당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는 통항
통제 등의 안전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삭제

<신 설>

안 되며,-----
도선사에게-----
-----해서는 안 된다.

제6조(통보 및 기록 등 관리·유지)

① 제4조에 따른 -----
-----기상악화 시의-----

하선시키려는 경우-----
-----팩스-----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지해야-----.

제7조 <삭제>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세칙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